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9. 11.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근 택



목 차



I. 개요	3
II. 일반회계	4
1. 예산규모	4
2. 세입예산	4
3. 세출예산	12
III. 특별회계	34
IV. 기금	41
V. 주요쟁점	44
1. 경기도 지방채	44
2. 내부거래	55
3. 기후대응기금 및 환경보전기금 통합	62
4. 지방이양사업	66
5. 10억원 이상 감액 및 90%이상 감액 편성 사업 검토	69
6.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 검토	73
7. 국비사업과 중복, 확대 자체사업	78

1

개 요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제 출 일 : 2026. 8. 19.
- 제출사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편성배경

-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 등 필수 민생사업 편성

3. 편성규모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1회 추경(A)	'26년 2회 추경(B)	증감액(C= B - A)	%	비 고
합 계	416,799	422,420	5,621	1.35%	
일반회계	373,364	376,466	3,102	0.83%	
특별회계*	43,435	45,954	2,519	5.80%	

*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억원)

구 분	'26년 기정액(A)	'26년 2회 추경(B)	증감액(C= B - A)	%	비 고
합 계	40,060	42,348	2,288	5.7%	

2

일반회계

1. 예산규모 : 37조 6,466억원(1회 추경 대비 3,102억원 ↑)

< 증 감 내 역¹⁾ >

(단위 : 억원)

세 입	1추 (a)	2추(안) (b)	증감 (b-a)	세 출	1추 (a)	2추(안) (b)	증감 (b-a)
	373,364	376,466	3,102		373,364	376,466	3,102
■ 지방세수입 보통세 △3,000 ■ 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1,560, 사업자 생 산수입 △252, 이자수입 90, 자치 단체간부담금 11, 기타수입 등 155 ■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1, 특별교부세 145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2,093, 군특 △138, 기금 1,124 ■ 지방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양여금 258,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283, 교육비 특별회계 23, 기금예수금 740 (통합계정 750, 지역개발기금 △10)	160,633	157,633	△3,000	■ 법적의무적 경비 징수교부금 54, 교육청지원경비 1,000 ■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 276 기금 전출금 127 예수금 상환 371 ■ 국고보조사업 국비 3,214 도비 177 ■ 용도지정사업 누리과정 23 부담금사업 20 ■ 행정운영경비 ■ 자체사업 경상사업 81, 투자사업 △2,019 ■ 예비비	81,074	82,128	1,054
	10,396	11,960	1,564		23,922	24,696	774
	79	234	155		205,840	209,231	3,391
	178,891	181,970	3,079		14,617	14,660	43
	7,180	7,180	-		6,182	5,960	△222
	16,185	17,489	1,304		41,301	39,363	△1,938
					428	428	-

2. 세입예산

가. 총괄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6년 기정액(A)		'26년 2회 추경(B)		증 감 (C=B-A)	증감률 (C/A)
		구성비		구성비		
계	373,364	(100%)	376,466	(100%)	3,102	4.5%
지방세수입	160,633	(43.0%)	157,633	(41.9%)	△3,000	△1.9%
세외수입	10,396	(2.8%)	11,960	(3.2%)	1,564	15.0%
지방교부세 등	79	(0.0%)	234	(0.1%)	155	200.0%
국고보조금 등	178,891	(47.9%)	181,970	(48.3%)	3,079	1.7%
보전수입 등	1,600	(0.4%)	2,140	(0.6%)	540	33.8%
내부거래	14,585	(3.9%)	15,348	(4.1%)	763	5.2%
지방채	7,180	(1.9%)	7,180	(1.9%)	0	0.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6번-마

나. 지방세 수입

- '26년 제2회 추경 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000억원을 감액(취득세 △2,500억원, 등록면허세 △500억원) 요구한 15조 7,633억원임.

< 지방세 세입 예결산 현황('24년 ~ '26년)²⁾ >

(단위 : 억원)

연도	예 산 액			결산액		초과수납액	
	본예산 (a)	추경증감액 (b)	최종예산 (c=a+b)	징수결정액 (d)	실제수납액 (e)	본예산대비 (f=e-a)	최종예산대 비 (g=e-c)
2026년	160,633	△3,000	157,633				
2025년	161,055	△8,000	153,055	157,154	153,614	△7,441	559
2024년	150,942	-	150,942	154,259	151,114	172	172

※2026년도는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준

- 2026년 7월 말 기준 도세는 8조 6,033억원 징수(목표대비 53.6%) 하였으며,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292억원(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14억원 (3.9%) 증가한 반면, 지방소비세는 △1,355억원(△6.7%) 감소하는 등 세목별로 상이한 징수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6년 7월 말 기준 전체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2025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액 편성된 이후 세입 여건과 목표액 간의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제2회 추경의 지방세 수입 감액은 최근의 징수실적 감소보다는 **당초 세입예산의 목표 수준과 실제 세수 여건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측면으로 보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가

<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26년 7월말 기준)³⁾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2025년			전년대비 징수증감액 (7월까지) (A-B)
	목표액 (기정액)	징수액 (7월까지) (A)	목표액 (최종예산액)	징수액 (7월까지) (B)	징수액 (최종액)	
계	160,633	86,033	153,055	85,741	153,615	292
취득세	81,510	45,654	77,390	43,940	78,473	1,714
등록면허세	6,457	3,352	6,471	3,502	5,534	△150
레저세	4,613	2,431	4,567	2,519	4,238	△88
지방소비세	40,086	18,765	38,413	20,120	38,164	△1,355
지역자원시설세	5,333	4,142	5,203	4,099	5,198	43
지방교육세	21,512	10,821	20,121	10,587	20,824	234
지난년도 수입	1,122	868	890	974	1,184	△106

○ 지방세 수입의 약 54.8%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경기에 특히 민감한 세목으로서, 제2회 추경 공통요구자료 증감사유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및 하반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및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감소로 등록면허세 세입 감소가 예상됨을 세입 감소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⁴⁾

- '26년 6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거래현황은 총 265,382건으로 전년 동기(242,274건) 대비 23,108건(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부동산 거래시장은 전년 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6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규제 및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을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입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바, 하반기 규제 강화가 실제 거래량 및 세수에 미칠 영향과 세입 감소 추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번

< 부동산 거래 현황('24년 ~ '26년 6월)⁵⁾ >

(단위 : 건)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총계	6월까지	총계	6월까지	6월까지
경기도(계)	508,172	244,925	502,489	242,274	265,382
공동주택	282,499	131,696	308,391	145,250	171,520
개별주택	11,178	5,547	10,499	5,248	6,121
토지	137,557	68,826	125,013	62,407	59,650
비주거용부동산	76,938	38,856	58,586	29,369	28,091
전국(계)	1,913,768	948,868	1,869,690	925,988	967,714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 토지(순수토지) / 비주거용부동산(상·공업용 등)

○ 지방세 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세목으로, 소비자출 등 국내 소비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26년 민간소비는 증시 활성화 및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경기 호조세 확대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⁶⁾
- 이에 따라 민간소비 회복과 경제성장세 확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의 확대를 통해 지방소비세 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부동산시장과 국내 경제여건의 변동성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세입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세목별 세입 실적과 부동산경기 및 경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실적에 기반한 정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과도한 세입 전망으로 재정운용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3번-나.

6) 성장 3%수출 4강소득 5만불 시대를 여는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26.7.14. 관계부처합동)

다. 세외수입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조 396억원) 대비 1,564억원 증가한 1조 1,960억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 1,598억원, 이자수입 90억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1억원, 기타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 △25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사업수입 중 GH공사 이익배당금 △2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25년 GH공사 당기순이익 감소⁷⁾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라. 지방교부세 등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79억원) 대비 155억원 증가한 234억원으로, 지방재정분야 인센티브 11억원,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및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등 145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경기도 본청은 '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그간 행정안전부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에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보통교부세로 '25년까지 교부하여 왔으나, '26년부터 불교부단체에 대한 '분권교부세 보전분' 지급이 중단됨.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분권교부세 보전분' 지급 중단은 '14년도 개정된 「지방교부세법」⁸⁾에 따라 '20년도부터 지급 중단이 예상되었음에도 道の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짐. 보통교부세 지급 중단은 道の 이전재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지방교부세 제도 변화와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변동이 道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용상 영향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7) 2026년도 제2회 추경 도시주택실 사업설명서 p.5.

- '25년 GH 당기순이익(이익배당금 재원) 감소 당초 2,403억 → 결산 1,179억 : 당기순이익 감소 주요 사유
⇒ 광고 개발이익 중재 폐소(749억원), 평택 고덕산단 삼성전자 정산금 소송(736억) 영향 등

8) 「지방교부세법」 부칙 <법률 제12953호, 2014. 12. 31.> 제2조(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9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7257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분권교부세 중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여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중략>...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국고보조금 등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7조 8,891억원) 대비 3,079억원 증가한 18조 1,970억원으로, 국고보조금 2,093억원, 기금 1,124억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138억원 감액 편성함.

바. 지방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존 발행액(7,180억원)외에 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으나, 본예산 및 1회 추경시 지방채 발행 사업을 2회 추경안에서 일부 조정함.
- '26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67억원⁹⁾ 이며 '26년 본예산에 5,202억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978억원을 추가 발행하여, 총 7,180억원 발행 하였으며, '26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9,367억원) 대비 77% 규모임.
- 부족한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 2025년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6년 제2회 추경까지 기존 지방채 발행 총액은 1조 6,610억원임.

< '25년도~ '26년도 지방채 발행 총괄 현황¹⁰⁾ >

(단위 : 억원)

구 분	'25년말 발행잔액(A)	'26년도 증감액(B)			'26년 말 최종잔액 (C=A+B)	비 고
		소계(a-b)	발행(a)	상환(b)		
지방채 발행액	9,430	7,180	7,180	0	16,610	
'25년 본예산 모집공채 (3년거치 일시상환)	2,099	0	0	0	2,099	
'25년 본예산 모집공채 (5년거치 일시상환)	2,731	0	0	0	2,731	
'25년 제3회 추경 금융기관채 (2년거치 8년 분할상환)	4,600	0	0	0	4,600	
'26년 본예산 모집공채 (3년거치 일시상환)	0	2,985	2,985	0	2,985	
'26년 본예산 모집공채 (5년거치 일시상환)	0	2,217	2,217	0	2,217	
'26년 제1회 추경 모집공채 (5년거치 일시상환)	0	1,978	1,978	0	1,978	

9)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총칙(P5)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8번-가

사. 보전수입 등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600억원) 대비 **540억원 증가한 2,140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58억원, 전년도 이월금 186억원, 보조금 반환금등 96억원을 증액 편성함.**
- 순세계잉여금은 2026년 본예산 1,000억원 및 제1회 추경에 58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제2회 추경에서 258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83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 집행 결과 발생하는 일회성 자원인 만큼, 최근 순세계잉여금 규모 및 재정 여건의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¹¹⁾ >

(단위 : 억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안)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본예산 (a)	1,000	3,500	6,000	600	-
최종예산 (b)	1,838	3,647	7,005	6,675	6,535
증감액(c=b-a)	838	147	1,005	6,075	6,535

아. 내부거래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1조 4,585억원) 대비 **763억원 증가한 1조 5,348억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음. **일반회계로 용자된 자원 750억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2026년 본예산 미편성분에 사용될 예정임.**¹²⁾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5번-가.

12)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24.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이율 2.5%)

자. 검토 의견

-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3,000억원 감액하는 한편,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을 활용하여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지방세 수입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고, '26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하반기 부동산 규제 및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 변화로 인한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세입 감소 추계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민간소비 및 경제성장 전망 등은 향후 지방소비세 세입 여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통교부세 지급 중단은 향후 경기도의 이전재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자체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부족한 세입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지방채 발행 총액은 1조 6,610억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채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재원이거나,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채무인만큼, 중장기적인 재정수지와 채무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따른 정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과도한 세입 전망을 지양하고, 세목별 징수실적과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재원규모

<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재원 배분현황¹³⁾ >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A)	1회 추경 예산 (B)	2회 추경 예산안 (C)	증감액 (D=C-B)	주요 증감사유
총 계	357,244	373,364	376,466	3,102	
법정·의무적 지출 등	316,648	332,063	337,103	5,041	
법적의무적경비	81,074	81,074	82,128	1,054	교육재정부담금,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매칭	191,084	205,840	209,231	3,391	정부내시 반영
용도지정	13,970	14,617	14,660	43	
행정운영경비	6,182	6,182	5,960	△222	
기타회계 전출금	18,012	18,024	18,299	276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기금전출금	393	393	520	127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차입금이자상황	140	140	140	-	
예수금원리금상환	5,365	5,365	5,737	372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428	428	428	-	
경상사업	5,410	5,437	5,518	81	
자체·투자사업	35,186	35,864	33,845	△2,019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6번-가-1)

○ 제2회 추경예산 증가 규모는 '26년 제1회 추경 대비 **3,102억원(0.8%) 증가한 37조 6,466억원**으로 편성됨.

- 교육재정부담금 및 징수교부금 등 법정 의무경비 1,054억원,
- 국비 등 재원변경 따른 국고보조사업 3,391억원,
- 용도지정사업 43억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는 △22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기타회계 전출금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273억원 등 276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기금전출금은 127억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액* 201억원 증액, 경기도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5억원 감액,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24억원 감액 등 74억원 감액 편성하였음.

* 법정경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순세계잉여금 1,838억원 - 법정경비 1,169억원) × 30%

- 자체·투자사업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2,0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 중단 우려가 있는 민생·돌봄·복지사업에 우선 배분한 추경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번 추경안이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갖는 만큼, 단순한 일회성 지출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지출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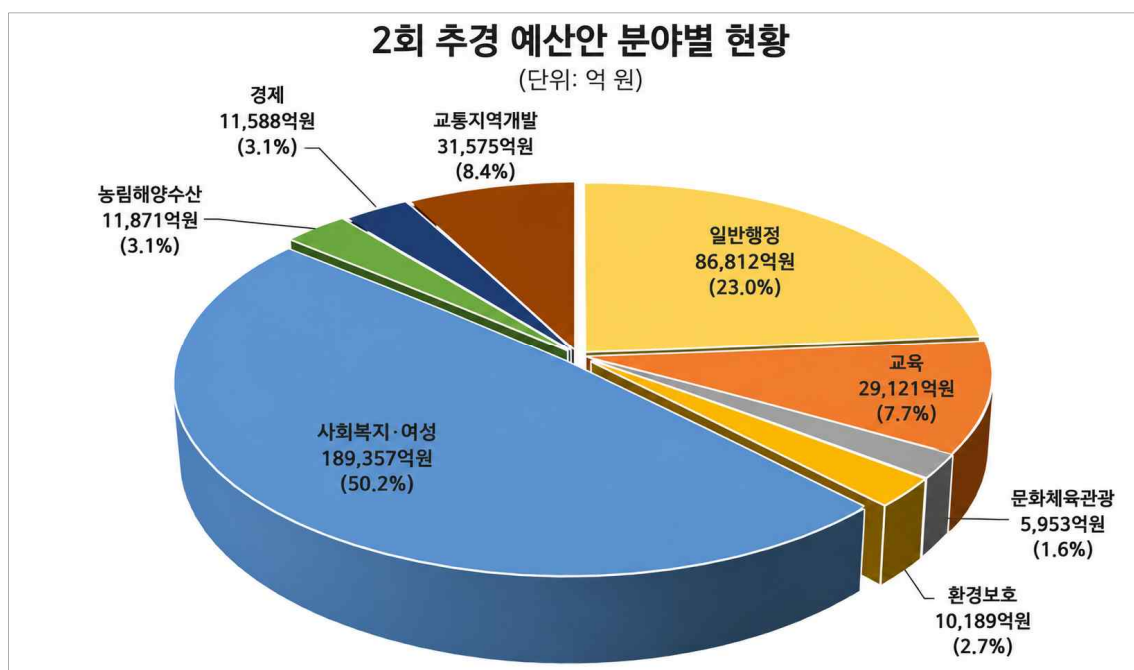
○ 행사성·일회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감액의 타당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분야(기능)별

<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재원 배분현황¹⁴⁾ >

(단위: 억 원)

구분	본예산 (A)	1회 추경 예산 (B)	2회 추경 예산안 (C)	증감액 (D=C-B)	주요 증감사유 (세부적으로 작성)
계	357,244	373,364	376,466	3,102	
일반행정	86,551	87,449	86,812	△637	세출 구조조정
교육	28,204	28,204	29,121	917	교육재정부담금,
문화체육관광	6,486	6,494	5,953	△541	경기관광공사·경기아트센터 운영 감액 등
환경보호	10,320	10,409	10,189	△220	RE100소득마을,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운영 감액
사회복지·여성	173,386	186,766	189,357	2,591	'26년 본예산 미반영 복지사업
농림해양수산	10,830	11,105	11,871	766	농어민기회소득, 교육청 급식비 지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경제	12,961	12,071	11,588	△483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 등
교통지역발전	28,506	30,866	31,575	709	SOC사업,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6번-나

○ 분야별 자원배분은 **사회복지·여성 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및 교통지역발전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민생·돌봄 및 복지안전망 강화) 사회복지·여성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91억원 증액하였으며, '26년 본예산 미반영으로 연말 사업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민생사업과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복지·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음.
- 주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및 의료급여 1,946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필수 복지·의료사업의 재원을 확대하였음.
- (도민 이동권 보장 및 SOC사업 추진) 교통지역발전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9억원 증액하였으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반영하였음.
- 주요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60억원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6억원을 증액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43억원, 안성 공도~양성 및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 사업에 71억원 등 연내 집행이 필요한 SOC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급식지원사업 강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66억원 증액하였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도교육청 급식비지원 584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국비사업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358개 사업(부기명 기준), 기정액 (4조 8,658억원) 대비 **3,391억원 증액된 5조 2,049억원임.**

- 국비등 3,214억원, 도비 177억원을 증액 편성함.

< 제2회 추경예산안 국비사업 편성 현황(총괄)¹⁵⁾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 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액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358	48,658	41,224	7,434	3,391	3,214	177	52,049	44,438	7,611
국고보조금	190	32,480	27,955	4,525	2,400	2,093	307	34,880	30,048	4,83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8	12,818	10,124	2,694	△273	△138	△135	12,545	9,986	2,559
기금	88	3,360	3,145	215	1,122	1,124	△2	4,482	4,269	213
교부세	12	-	-	-	142	135	7	142	135	7

○ ‘The 경기패스’ 1,213억원, ‘주거급여’ 1,066억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70억원, ‘아동수당 급여’ △37억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30억원 등 △253억원 감액 편성 하였음.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8번-가

○ (성립전예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 국비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예산은 41개 사업, 기정액 대비 87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편성사유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기금/직접) 356억원
-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201억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기금/직접) 100억원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기금/지원) 46억원 등 증액 편성 하였음.

< 제2회 추경예산안 성립전 예산 편성 현황(총괄)¹⁶⁾>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 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액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41	27,053	27,053	-	87,399	86,182	1,217	114,452	113,235	1,217
국고보조금	16	-	-	-	6,296	5,554	742	6,296	5,554	742
지역균형발 전특별화계보 조금	10	-	-	-	3,693	3,241	452	3,693	3,241	452
기금	10	27,053	27,053	-	71,883	71,860	23	98,936	98,913	23
교부세	5	-	-	-	5,527	5,527	-	5,527	5,527	-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8번-나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21개 사업(부기명 기준), 255억원임.¹⁷⁾
- 주요 신규 자체사업으로는
 - 화성 갈천-오산 가수 도로확포장 116억원
 - 용인 독성~이천 선읍 도로확포장 92억원
 -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33억원
 -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포장(지방채) 30억원
 - 남양주 내방-가평 연하 도로확포장(지방채) 14억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급 1.5억원 등임.
- 지방재정법 제45조¹⁸⁾에 규정된 추경예산의 편성근거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본예산 편성 시 예상 못한 중대한 상황변화의 발생여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금번 추경안의 신규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했는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등 사전 예산안 산출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 가능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가-A.

18)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¹⁹⁾ >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제2회추경 예산안	신규편성 사유	공약 사업 여부
총 계				25,509		
안전관리실				121		
1	자연재난과	소규모 위험시설(소교량) 재설치사업(특교세)	자치단체 자본보조	121	- '23년 7월 호우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정산 결과 집행잔액 용도변경 승인(항정안전부)	X
도시주택실				45		
2	토지정보과	AI기반 거래 안전망(전세파해 예방) 솔루션 구축 사업(자체/직접) - 서비스 사용료	사무관리비	45	시범운영 예상 이용량을 반영한 공공민간데이터 사용료 증액 편성 - 부담금 45백만원 세입 편성	O
자치행정국				20		
3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릴레이 경기도 탄소OFF 챌린지(성립전)	민간위탁금	20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행안부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공모지원 사업에 선정됨	X
복지국				28.6		
4	복지사업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기타보상금	4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1건에 대한 도비 부담금 편성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8540(2026.3.10.)호]	X
5	노인복지과	경기도노인맞춤돌봄센터 종사자 월빙보조비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2	전담사회복지사(10명) 월빙보조비(월 2만원) 지급 필요(본예산 착오편성으로 시군보조 감액 -> 도직접 신규편성)	X
6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도 직접)	사회보장적수 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0.5	도 직접 시설(비영리법인 등) 사회복지종사자(9명) 장기근속비(연 5만원) 편성 필요(본예산 미편성)	X
7	장애인복지과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1	26년 본예산 미편성으로 기 선정자(23명)의 재활치료 지원 중단 및 3자 업무협약 이행 불가	X
8	장애인복지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기타보상금	0.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장애인복지급여 부정수급 건(장애수당 1건)에 대해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도비 분담금 지급	X
9	장애인복지과	파해장애인쉼터 LH임대 주택 증액보증금	기타자본이전	1	경기북부파해장애인쉼터 LH임대주택 보증금 증액분 발생	X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가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제2회추경 예산안	신규편성 사유	공약 사업 여부
여성가족국				184		
10	보육정책과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자원)	14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시군 육아종합지원 종사자에대한 웰빙보조비 5개월분 추가 편성 ※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7개월분 지급	X
11	보육정책과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자원)	35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시군 육아종합지원 종사자에대한 장기근속비 편성 필요	X
건설국				25,797		
12	도로정책과	화성 갈천-오산 가수 도로확포장	시설비	11,572	화성시 송배수관로 위수탁사업비 납입('26.3.)에 따른 공사비 편성	X
13	도로정책과	화성 우정-향남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3,000	보상 추진에 따른 이의제결(8,10차)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비 편성	X
14	도로정책과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360	투자심사 완료('26.4.)에 따른 공사 착공 필요 예산 공사비 편성	X
15	도로정책과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지방채)	감리비	140	투자심사 완료('26.4.)에 따른 공사 착공 필요 예산 감리비 편성	X
16	도로정책과	남양주 내방-가평 연하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1,400	투자심사 완료('26.4.)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 필요 예산 설계비 편성	X
17	도로정책과	용인 독성~이천 선읍 도로확포장	시설비	9,150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약 체결 관련 용역비 편성	X
18	도로정책과	용인 독성~이천 선읍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	50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약 체결 관련 부대비 편성	X
19	도로안전과	도로포장 조사·분석	시설비	1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 선정에 따른 지원금(1.25억원)을 활용하여 도로 구조물 인근 도로의 포트홀 및 지반침하 위험을 선제적으로 조사·분석	X
국제협력국				13		
20	투자진흥과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지원(의정부) (국가직접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	의정부 소재 미군반환공여지 대상 잠재 외투기업 발굴, 국내외 IR, MOU 체결 등의 투자수요 확보를 위한 사업비 신규 편성	X
건설본부				3,300		
21	도로건설과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3,300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반영	X

2) 증액편성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30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2,42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행정운영과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 대상

○ 주요증액 자체사업으로는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원
-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584억원
-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38억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23억원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15억원
-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 30억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2026년 본예산 심의시 감액된 사업을 제2회 추경(안)에서 재요구 한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2026년 본예산 확장액(390억원) 대비 60억원을 추가 요구하였음.

< '26년 본예산안 심의시 감액(전액·일부)된 사업을 재요구 한 사업 내역²⁰⁾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본예산		2회 추경예산안 (b)	증액(c=b-a)	증액내역 및 사유
			예산안 요구액	확정액(a)			
	교통국		49,679	39,000	45,000	6,000	
1	버스정책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49,679	39,000	45,000	6,000	부족분 일부 증액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2번-가

< 증액사업 편성 현황(30%이상 증액)²¹⁾>

(단위 : 백만원, %)

연 번	부서 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 액 (a)	제2회 추경 예산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 여부
							집행 액	집행 률	실집 행액	실집 행률		
합 계				467,234	699,844	242,607	355,652	76.1	225,355	48.2		
홍보기획관				2.2	3.7	1.5	0.7	31.8	0.7	31.8		
1	정책 홍보 담당 관	공정수당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1.5	2.4	0.9	-	-	-	-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신규 근로자 공정수당 편성	X
2	정책 홍보 담당 관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비	0.7	1.3	0.6	0.7	100	0.7	100	기간제 근로자 퇴사로 인한 신규 근로자 복지비 편성	X
복지국				182,722	312,206	129,484	182,062	99	180,631	99		
3	복지정 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약계층, 지방재원)	5,300	7,000	1,700	5,299	99	5,200	98	3개월분 미편성	X
4	복지사 업과	복지사업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사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추약계층, 지방재원)	12	16	4	-	-	-	-	수요조사 후 장기근속비 일괄지급 (개인별 연회)을 위한 부족분 반영	X
5	노인복 지과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276	7,298	3,022	4,276	100	4,169	97.5	본예산 일부 편성 예산부족분 추가확보	X
6	노인복 지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492	43,244	23,752	19,492	100	19,492	100	예산 부족분 추가 확보, 복지부 최종 소요액 반영	X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 추경 예산안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 여부
							집행 액	집행 률	실집 행액	실집 행률		
7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9,199	248,823	99,624	149,199	100	149,199	100	예산 부족분 추가 확보, 복지부 최종 소요액 반영	X
8	장애인 복지과	시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86	1,297	311	986	100	650	66	본예산 9개월분 편성되어 3개월분 증액 필요	X
9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372	494	122	372	75	233	63	본예산 9개월분 편성되어 3개월분 증액 필요	X
1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단거주시설 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80	1,421	341	864	80	648	60	본예산 9개월분 편성되어 3개월분 증액 필요	X
11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6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94	2,597	603	1,565	78	1,031	52	본예산 9개월분 편성되어 3개월분 증액 필요	X
12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도 직접)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2	4	2	-	-	-	-	수요조사 후 장기근속비 일괄지급(연1 회)을 위한 부족분 반영 (47명→89명)	X
13	장애인 자립지 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도 직접)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0.4	0.6	0.2	-	-	-	-	수요조사 후 장기근속비 일괄지급(개인 별 연 1회) 위한 부족분 반영	X
14	장애인 자립지 원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9	12	3	9	100	9	100	3개월 부족분 증액 요청	X

연 번	부서 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 액 (a)	제2회 추경 예산안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 여부
							집행 액	집행 률	실집 행액	실집 행률		
보건건강국				50,380	72,896	22,513	45,401	90	39,655	78.7		
15	건강 증진 과	난임부부 사술비 지원	지역단체 경상 보조금	49,776	72,089	22,313	44,798	90	39,052	78	미편성 3개월분 및 사업량 37,600건 증가	X
16	정신 건강 과	기초정신건강복 자센터 등 종사자 차량관리비 지원	사회보 장적수 혜금	604	807	203	603	99	603	99	3개월 미반영분 및 시군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 증가분 증액	X
농수산생명 과학국				219,317	289,391	80,074	122,730	56	148	0.07		
17	농업 정책 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회보 장적수 혜금(취 약계층, 지방재 원)	43,979	65,524	21,545	35,142	80	-	-	본예산 미편성 금액 편성	X
18	친환 경급 식지 원센 터	도교육청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교육기 관에대 한 보조	175,000	223,350	58,350	87,500	50	-	-	본예산 미편성 금액 편성	X
19	종자 관리 소	생산보상금	기타 보상금	338	517	179	148	43	148	44	'26년산 벼 우선지급금 반영으로 증액	X
여성가족국				28.5	49.9	21.4	14.5	51	0.5	1.8		
20	가족 정책 과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자치단 체경상 보조금	28	49	21	14	50	-	-	시군 수요 증가(2,652명 →4,691명)에 따른 2,039명분 추가 반영	X
21	보육 정책 과	육아종합지원센 터 장기근속비	사회보 장적수 혜금(취 약계층, 지방재 원)	0.5	0.9	0.4	0.5	100	0.5	100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 센터 종사자 장기근속비 부족분(8명) 반영 필요	X

연 번	부서 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 액 (a)	제2회 추경 예산 (b)	증액 (c=b-a)	집행실적				증액편성 사유	공약 사업 여부
							집행 액	집행 률	실집 행액	실집 행률		
건설국				9,364	13,484	4,120	1,771	18.9	1,771	18.9		
22	도로 정책 과	안성 공도-양성(1) 도로확포장(지 방채)	시설비	9,047	13,049	4,002	1,714	19	1,714	19	'26.11. 준공에 따른 부족 예산에 대한 공사비 증액	X
23	도로 정책 과	안성 공도-양성(1) 도로확포장(지 방채)	감리비	317	435	118	57	18	57	18	'26.11. 준공에 따른 부족 예산에 대한 감리비 증액	X
미래성장 산업국				1,800	2,400	600	1,800	100	1,375	76.4		
24	반도 체 산업 과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대 한경상 적위탁 사업비	1,800	2,400	600	1,800	100	1,375	76.4	반도체 기술센터 필수 운영비 (10~12월) 확보	O
농업기술원				3,559	9,293	5,734	1,767	49.6	1,728	48.5		
25	원예 연구 과	원예작물신품종 및 품질급화 연구(자체/직접)	공공 운영비	434	768	334	434	100	395	91	시험연구시설 난방비 본인 미반영분 반영	X
26	기술 보급 과	공적방제 손실보상	기 타 보상금	1,875	2,775	900	337	18	337	18	군고 예산 내지 변경	X
27	기술 보급 과	과화상병 전염 사원 제거보상	기 타 보상금	1,250	5,750	4,500	996	80	996	80	군고 예산 내지 변경	X
의회사무처				61	120	59	46	75	46	75		
28	총무 과	장애의원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61	82	21	46	75	46	75	장애의원 보조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1→3명)	X
29	총무 과	공무직원 대체인력 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	27	27	-	-	-	-	대체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확보 (0→2명)	X
30	총무 과	공무직원 대체인력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제 도시행 경비	-	11	11	-	-	-	-	대체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확보 (0→2명)	X

3) 감액편성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감액사업은 2,057개 사업(부기명 기준) **5,465억원**으로 집행저조, 유사중복사업 재검토, 사업량 조정, 집행잔액 등을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 기정예산 대비 ‘30억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46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3,016억원을 감액**(전체 5,465억원 대비 55%)하여 편성함.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236억원 감액
 - 양주 부곡-부곡 도로확포장(지방채) △190억원 감액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64억원 감액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14억원 감액
 -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95억원 감액
 - 경기관광공사 운영 △95억원 감액 등이 있음.
- 다만, 금번 추경에서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된 사업 중에는 향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일몰되거나 감액된 규모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있는 만큼, 단순히 금년도 집행실적이나 집행잔액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민생지원 및 교통·SOC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비 감액 또는 일몰이 실제 사업 축소·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필요성, 향후 수요 및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일률적인 감액 또는 일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30억 이상 감액 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추경 예산안 (b)	감액 (c=a-b)
	총계			1,237,723,567	936,153,865	-301,569,702
1	자치행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부담금	기타부담금	81,528,551	57,880,551	-23,648,000
2	도로정책과	양주 부곡-부곡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20,000,000	1,000,000	-19,000,000
3	지역금융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16,350,000	0	-16,350,000
4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311,980,178	300,538,178	-11,442,000
5	철도건설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시설비	9,500,000	0	-9,500,000
6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	31,606,400	22,113,900	-9,492,500
7	인사과	퇴직급여 부담금	연금부담금	83,800,816	74,786,816	-9,014,000
8	도로정책과	광주 실촌-만선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17,004,000	8,004,000	-9,000,000
9	도로정책과	안성 성환-입장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9,313,000	1,000,000	-8,313,000
10	도로정책과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11,000,000	3,000,000	-8,000,000
11	예술정책과	경기아트센터 운영	출연금	55,076,400	47,394,000	-7,682,400
12	하천과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방채)	시설비	15,100,000	8,100,000	-7,000,000
13	에너지산업과	경기 RE100 소득마을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2,837,000	6,057,000	-6,780,000
14	소상공인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39,475,000	32,877,378	-6,597,622
15	도로정책과	광주 무갑-광동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7,000,000	500,000	-6,500,000
16	복지정책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금	11,050,345	4,789,434	-6,260,911
17	도로건설과	도로 포장 유지관리	시설비	6,848,000	635,952	-6,212,048
18	보건의료정책과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6,000,000	0	-6,000,000
19	도로정책과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10,000,000	4,000,000	-6,00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가정액 (a)	제2회추경 예산안 (b)	감액 (c=a-b)
20	도로정책과	화성 장지-용인 남사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7,852,000	2,000,000	-5,852,000
21	기획전략담당관	경기연구원 출연	출연금	17,752,000	12,077,300	-5,674,700
22	문화정책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 보조	6,000,000	500,000	-5,500,000
23	인권담당관	선감학원사건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배상금등	6,000,000	797,860	-5,202,140
24	회계과	기본급(연봉제)	보수	126,266,562	121,236,562	-5,030,000
25	노동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공기관등에대 환경상적위탁 사업비	15,046,520	10,043,360	-5,003,160
26	주택정책과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5,000,000	0	-5,000,000
27	주택정책과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5,000,000	0	-5,000,000
28	평생교육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시·도 비법정전출금	5,000,000	0	-5,000,000
29	하천과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시설비	5,000,000	0	-5,000,000
30	하천과	용인 동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시설비	19,200,000	14,200,000	-5,000,000
31	도로정책과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10,000,000	5,300,000	-4,700,000
32	청소년과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지방채)	시설비	4,632,000	0	-4,632,000
33	기후환경정책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42,701,167	38,106,167	-4,595,000
34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0,035,947	55,519,947	-4,516,000
35	하천과	하남 초이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시설비	10,000,000	5,520,000	-4,480,000
36	농식품유통과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공기관등에대 환경상적위탁 사업비	18,000,000	13,808,874	-4,191,126
37	버스관리과	시내버스 적자노선지원금	운수업체보조 금	40,000,000	36,000,000	-4,000,000
38	청년기획과	청년 복지포인트	공기관등에대 환경상적위탁 사업비	19,650,000	15,660,000	-3,990,000
39	청년기획과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공기관등에대 환경상적위탁 사업비	12,780,000	8,980,000	-3,800,000
40	청년기획과	청년 면접수당	공기관등에대 환경상적위탁 사업비	6,654,681	3,154,681	-3,500,000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가정액 (a)	제2회추경 예산안 (b)	감액 (c=a-b)
41	군협력담당관	경기도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20,000,000	16,500,000	-3,500,000
42	도로정책과	파주 금릉-조리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4,000,000	651,572	-3,348,428
43	총무과	경기도기록원 설립(제1별관 등 공사비)	시설비	5,222,000	1,959,333	-3,262,667
44	도로정책과	김포 운양-하성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3,441,000	441,000	-3,000,000
45	하천과	시흥 은행천(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시설비	4,020,000	1,020,000	-3,000,000
46	지역금융과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카드 지원	출연금	3,000,000	0	-3,000,000

4) '26년 본예산 편성시 자원부족 등으로 일부 편성사업 내역

- '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편성한 사업은 총 57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총 필요요구액 1조 7,393억원 중 1조 2,418억원이 편성되어 당초 필요액 대비 △4,975억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 중 47개 사업에 예산을 조정하여 총 1조 5,694억원을 편성함으로써 본예산 편성 당시의 부족액은 4,975억원에서 1,699억원으로 축소되었음.
- 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도 **선감학원사건 민사소송 배상금지금 30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27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30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150억원,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92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85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80억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필요요구액에 비해 예산 편성액이 미달하는 사업이 존재하여,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원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집행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부족 재원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향후 집행 실적과 추가 소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①필요요구액의 산정근거가 적정한지, ②제2회 추경 이후에도 필요요구액 대비 미확보 재원이 남아 있는 사업은 없는지, ③예산부족이 반복되는 사업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6년 본예산안 편성시 자원부족 등으로 일부만 편성된 사업 내역²²⁾ >

(단위 : 백만원)

연 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본예산		1회추경 편성액*	2회 추경예산 안(c)	증감액 (d=c-b)	필요요구 액 대비 증감액 (e=c-a)
			필요 요구액 (a)①	본예산안 편성액 (b)②				
총 계			1,739,316	1,241,820	406,394	1,569,357	327,537	△169,959
도시주택실			7,909	5,932	-	7,909	1,977	0
1	주택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909	5,932	-	7,909	1,977	0
복지국			444,355	217,285	158,823	390,443	173,158	△53,912
2	복지정책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 센터 운영	3,440	2,800	-	3,406	606	△34
3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호수당	6,120	5,300	-	7,000	1,700	880
4	복지정책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6,000	3,000	-	3,000	-	△3,000
5	복지사업과	경기도형 긴급복지	8,491	4,965	7,664	5,634	669	△2,857
6	복지사업과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	436	372	-	359	△13	△77
7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42,723	107,727	149,199	248,823	141,096	6,100
8	노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2,031	19,492	-	43,244	23,752	1,213
9	노인복지과	노인 월동난방비 등 지원	7,127	4,276	-	7,298	3,022	171
10	노인복지과	노인알자리 수행기관 지원	3,080	2,002	-	2,000	△2	△1,080
11	노인복지과	노인알자리 취창업 초기투자비, 노후시설 개선비 및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1,149	747	-	747	-	△402
12	노인복지과	노인알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1,048	18,158	-	18,116	△42	△22,932
1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2,373	1,880	1,960	2,522	642	149
14	장애인복지과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차우개선비	4,786	3,569	-	4,542	973	△244
1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07	372	-	494	122	△13
16	장애인복지과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1,902	1,427	-	1,851	424	△51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2번-나

연 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본예산		1회추경 편성액*	2회 추경예산 안(c)	증감액 (d=c-b)	필요요구 액 대비 증감액 (e=c-a)
			필요 요구액 (a)①	본예산안 편성액 (b)②				
17	장애인복지과	사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지원	1,314	986	-	1,297	311	△17
1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1,312	1,116	-	1,447	331	135
1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거주시설운영	1,260	1,080	-	1,421	341	161
2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6종)	2,393	1,994	-	2,597	603	204
2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42,075	14,965	-	14,949	△16	△27,126
22	장애인복지과	도비장애수당	5,717	4,962	-	5,550	588	△167
23	장애인복지과	잡자도서관운영지원	379	346	-	354	8	△25
2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대소변흡수용품구입지 원	639	415	-	415	0	△224
25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기회소득운영	13,700	11,905	-	9,955	△1,950	△3,745
2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원	785	669	-	785	116	0
27	장애인자립지 원과	경기도최중증발달장애인맞춤 돌봄	1,429	1,129	-	1,044	△85	△385
28	장애인자립지 원과	경기도최중증발달장애인가족 돌봄	1,209	786	-	771	△15	△438
29	장애인자립지 원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직무지도원 파견	930	845	-	822	△23	△108
보건건강국			34,512	24,621	-	24,612	△9	△9,900
30	건강증진과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사업	29,134	21,125	-	21,125	-	△8,009
31	응급의료과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육성	2,800	1,820	-	1,820	-	△980
32	응급의료과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 타지원	1,700	1,105	-	1,105	-	△595
33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치료지원	878	571	-	562	△9	△316
농수산생명과학국			372,657	272,885	-	355,175	82,290	△17,482
34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	74,705	43,979	-	65,524	21,545	△9,181
35	친환경농업과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	14,032	10,524	-	10,240	△284	△3,792
36	친환경농업과	대학생천원의아침밥	800	488	-	488	-	△312
37	친환경농업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	6,500	3,600	-	2,600	△1,000	△3,900
38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미크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41,360	37,913	-	41,413	3,500	53
39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친환경등우수농산물영양공 공급식지원	1,390	1,043	-	1,043	-	△347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본예산		1회추경 편성액*	2회 추경예산 안(c)	증감액 (d=c-b)	필요요구 액 대비 증감액 (e=c-a)
			필요 요구액 (a)①	본예산안 편성액 (b)②				
40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유초 중 고등학교급식비지원	233,350	175,000	-	233,350	58,350	0
41	종자관리소	생산보상금	520	338	-	517	179	△3
미래평생교육국			80,766	60,575	-	76,893	16,318	△3,873
42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80,766	60,575	-	76,893	16,318	△3,873
여성가족국			47,393	43,756	705	50,698	6,942	3,305
43	가족정책과	아이돌봄비 영아돌봄수당 지원	617	401	705	705	304	88
44	아동돌봄과	결식아동급식지원	27,943	26,957	-	34,476	7,519	6,533
45	아동돌봄과	가족돌봄수당지원	6,856	5,100	-	4,335	△765	△2,521
46	아동돌봄과	아동양육시설운영	9,256	9,137	-	9,107	△30	△149
47	아동돌봄과	아동그룹홈인건비추가지원	2,007	1,697	-	1,667	△30	△340
48	고용평등과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714	464	-	408	△56	△306
교통국			715,426	606,997	245,000	658,100	51,103	△57,326
49	광역교통정책 과	수요응답형버스(DRT)운영지원	20,885	17,042	-	17,042	-	△3,843
50	광역교통정책 과	아동지원센터운영지원	48,452	36,339	-	40,000	3,661	△8,452
51	버스정책과	수도권환승할인지원	245,000	181,600	245,000	245,000	63,400	0
52	버스정책과	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지원	70,528	60,036	-	55,520	△4,516	△15,008
53	버스정책과	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	330,561	311,980	-	300,538	△11,442	△30,023
축산동물복지국			2,500	2,200	-	2,200	-	△300
54	축산정책과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	2,500	2,200	-	2,200	-	△300
인권담당관			31,152	6,000	-	798	△5,202	△30,354
55	인권담당관	선검학원사건민사소송배상금 지급	31,152	6,000	-	798	△5,202	△30,354
농업기술원			2,646	1,569	1,866	2,529	960	△117
56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비및체세공과금	1,878	1,135	1,866	1,761	626	△117
57	원예연구과	시험연구시설장비유지보수및 난방비등	768	434	-	768	334	0

* 1회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 표기

① 필요요구액 : 12개월 사업 추진시 필요한 예산액

② 예산안 확정 편성액

3

특별회계

1. 예산규모 : 4조 5,954억원('26년 1회 추경 대비 2,519억원 ↑, 5.8% ↑)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4조 3,435억원)대비 2,519억원 증가한 4조 5,954억원임.

(단위 : 억원)

구 분	'26년 1회 추경 (A)	'26년 2회 추경안 (B)	증 감 (B - A)	비 고 (주요 증감내역 등)
합 계	43,435	45,954	2,519	
공기업특별회계(2종)	470	549	79	
판교테크노밸리	320	326	6	(세입) 순세계잉여금 4억원, 기타임대수입 2.2억원 (세출) 판교제1TV관리 △1.3억원, 판교제2TV산업단지관리 △0.3억원,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 △0.7억원,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운영 및 관리 3.9억원,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비품 구입 0.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원
고 덕 국 제 화 계 획 지 구	150	223	73	(세입) 택지판매수입 20.8억원, 순세계잉여금 52.1억원 (세출) 공공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6.4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9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0.7억원
기타특별회계(9종)	42,965	45,405	2,440	
의 료 급 여 기 금	22,620	24,471	1,851	(세입) 국고보조금 1,557억원, 도비부담금 274억원, 시군부담금 116억원, 그외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원 (세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등예탁금 1,946억원, 의료급여사업 지원 1억원, 예비비 △96억원
팔 당 호 관 리	42	42	-	-
학교용지부담금	934	1,124	190	(세입) 학교용지부담금 397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2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원 (세출) 학교용지확보 △87억원, 징수교부금 14억원, 예비비 2억원, 예탁금 261억원
광 역 교 통 시 설	1,869	1,596	△273	(세입) 자치단체간부담금 △130억원, 지난연도수입 △200억, 순세계잉여금 41억원 등 (세출) 예탁금 △200억원, 기타부담금 △80억원, 징수교부금 △16억원 등
지 역 균 형 발 전	394	394	-	-
소 방 안 전	15,655	16,076	421	(세입) 기타수입 41억원, 소방안전교부세 64억원, 순세계잉여금 316억원 (세출) 인건비 403억원, 정책사업비 18억원
도 시 재 생	417	469	52	(세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1.6억원, 순세계잉여금 35.8억원 (세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99	202	3	(세입) 위탁비반환수입 0.8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예탁금이자수입 0.7억원 등
순 환 경 제	835	1,031	196	(세입) 징수교부금수입 26억원, 국고보조금 77억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81억원 등 (세출) 소각시설 설치 152억원, 국고보조금반환 69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25억원

2.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가. 공기업특별회계

○ (판교테크노밸리) 기정예산(320억원) 대비 6억원 증가한 326억원

- 세입 : 순세계잉여금 4억원, 기타임대수입 2.2억원
- 세출 : 판교제1TV관리 $\Delta 1.3$ 억원, 판교제2TV산업단지관리 $\Delta 0.3$ 억원,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 $\Delta 0.7$ 억원,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운영
및 관리 3.9억원,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비품 구입 0.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8억원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기정예산(150억원) 대비 73억원 증가한 223억원

- 세입 : 택지판매수입 20.8억원, 순세계잉여금 52.1억원
- 세출 :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Delta 16.4$ 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9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Delta 0.7$ 억원

나. 기타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 기정예산(2조 2,620억원) 대비 1,851억원 증가한 2조 4,471억원

- 세입 : 국고보조금 1,557억원, 도비부담금 274억원, 시군부담금 116억원, 그외
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Delta 99$ 억원
- 세출 :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등 예탁금 1,946억원, 의료급여사업 지원 1억원,
예비비 $\Delta 96$ 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기정예산(934억원) 대비 190억원 증가한 1,124억원

- 세입 : 학교용지부담금 397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Delta 226$ 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원
- 세출 : 학교용지확보 $\Delta 87$ 억원, 징수교부금 14억원, 예비비 2억원,
예탁금 261억원

○ (광역교통시설) 기정예산(1,869억원) 대비 273억원 감소한 1,596억원

- 세입 : 자치단체간부담금 △130억원, 지난연도수입 △200억원, 순세계잉여금 41억원 등
- 세출 : 예탁금 △200억원, 기타부담금 △80억원, 징수교부금 △16억원 등

○ (소방안전) 기정예산(1조 5,655억원) 대비 421억원 증가한 1조 6,076억원

- 세입 : 기타수입 41억원, 소방안전교부세 64억원, 순세계잉여금 316억원
- 세출 : 인건비 403억원, 정책사업비 18억원

○ (도시재생) 기정예산(417억원) 대비 52억원 증가한 469억원

- 세입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1.6억원, 순세계잉여금 35.8억원
- 세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8.8억원

○ (지역자원시설세) 기정예산(199억원) 대비 3억원 증가한 202억원

- 세입 : 위탁비반환수입 0.8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예탁금이자수입 0.7억원 등
- 세출 : 변동없음

○ (순환경제) 기정예산(835억원) 대비 196억원 증가한 1,031억원

- 세입 : 징수교부금수입 26억원, 국고보조금 77억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81억원 등
- 세출 : 소각시설 설치 152억원, 국고보조금반환 69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25억원

3. 국비사업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총 34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기정액 대비 2,191억원 증액하였음.

- 국비 등 1,692억원 증액 및 도비 499억원을 증액 편성함.

< 제2회 추경예산안 국비사업 편성 현황(총괄)²³⁾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 개수 (부기 기준)	기정액 (a)			증감액 (b)			예산액 (c=a+b)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국비 등	도비
계	34	24,373	19,766	4,607	2,191	1,692	499	26,564	21,458	5,106
국고 보조금	12	22,947	18,340	4,607	2,075	1,634	441	25,022	19,974	5,048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	277	277	-	1	△6	7	278	271	7
기금	-	-	-	-	-	-	-	-	-	-
교부세	19	1,149	1,149	-	115	64	51	1,264	1,213	51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8번 가.

4. 사업현황

가. 신규편성

○ 신규 자체사업은 9개 사업(부기명 기준), 291억원을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 대상, 행정운영과 재무활동 제외

< 주요 신규 사업 편성 현황²⁴⁾ >

(단위 : 백만원)

연 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제2회추경 예산안	신규편성사유
계				29,118	
1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95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2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비품 구입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80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에 따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3	도로정책과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18,900	대광위 '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상비 편성
			시설부대비	100	대광위 '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 편성
4	도로정책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공사	자치단체 자본보조	7,828	대광위 '26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상비 편성
5	회계장비 담당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시흥 장곡119안전센터신축)	시설비	248	안전체험관 설계 추가에 따른 설계비 반영
6	회계장비 담당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안성 양정119안전센터신축)	시설비	260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설계비 반영
7	회계장비 담당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고양 관산119안전센터신축)	시설비	60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인증비 반영
8	수원남부소방서	시소유 소방청사 매입	시설비	644	시소유 청사 매입 계약금(10%) 반영
9	성남소방서	시소유 소방청사 매입	시설비	603	시소유 청사 매입 계약금(10%) 반영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9번 가.

나. 증액편성

-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은 9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15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함.

< 증액편성(30% 이상 증액) 사업현황²⁵⁾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추경 예산안 (b)	증액 (c=b-a)	증액편성사유
계				14,055	29,336	15,205	
1	택지 개발과	차입금 원금 상환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6,500	15,500	9,000	차입금 조기상환
2	평생 교육과	장수교부금	장수교부금	1,304	2,744	1,440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장수교부금 증가
3	철도 정책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분담금 (자체/직접)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5,212	9,498	4,286	국비증액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 증액
4	소방 행정과	기관공통 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공공운영비	200	400	200	유가 증가에 따른 소방차량 유류비 반영
5	재난 대응과	현장대응 민간활동 보상	기타보상금	100	130	30	민간자원 동원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추가 반영
6	인사 담당관	인사운영 효율적 지원	포상금	80	106	26	모범공무원 규정 개정에 따른 수당 인상분 반영
7	인사 담당관	소방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국제화여비, 사무관리비	551	793	166	'26년도 국외훈련 대상자 확대 선발에 따른 증가분 반영
8	인사 담당관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현	사무관리비	58	95	37	'26년도 신규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필기시험장 운영비용 부족분 반영
9	대응과	현장대응 민간활동 보상	기타보상금	50	70	20	민간자원 동원 수요 증가에 따른 부족분 추가 반영

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0번

다. 감액편성

-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 중 1억원 이상 감액은 8개 사업(부기명 기준)으로, 64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함.

< 감액편성(30% 이상 감액 중 1억원 이상 감액) 사업현황²⁶⁾ >

(단위 : 백만원)

연 번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기준)	통계목	기정액 (a)	제2회추경 예산안 (b)	감액 (c=a-b)	감액편성사유
계				97,687	33,472	△64,214	
1	복지사업과	의료급여 예비비	일반예비비	20,117	10,543	△9,574	진료비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
2	광역교통 정책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예탁금	31,419	11,200	△20,219	부담금 감소 및 광역교통시설사업 지원 후 세출 미편성액
3	철도정책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41,748	11,520	△30,228	광명구간 붕괴사고('25.4)에 따른 사업 지연
4	자원순환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510	76	△434	국비 내시 반영 (공사일정 지연)
5	자원순환과	동두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2,587	110	△2,476	국비 내시 반영 (공사일정 지연)
6	소방행정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국제화여비	375	2	△373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제한조치에 따른 불용예상액 감액
7	소방행정과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추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사무관리비	100	0	△100	道 재정 악화에 따른 행사성 사업 일몰
8	회계장비 담당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시설비	831	21	△810	공사비 단가 상승 및 기존 비축창고시설 활용 예정에 따른 비축물류창고건립사업 일몰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1번

4

기금

1. 운용규모 : 4조 2,375억원('26년 기정액 대비 2,315억원 ↑, 5.8% ↑)

○ 기정예산(4조 60억원) 대비 2,315억원이 증액된 4조 2,375억원임.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단위 : 억원)

구 분		'26년 기정액 (A)	'26년 2회 추경안 (B)	증 감 (C= B - A)	비 고
합 계 (24개 29종)		40,060	42,375	2,315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4,285	4,491	206	(수입) 특별회계-기금 예수금 226억원, 예치금회수 △20억원 (지출) 일반회계예탁금 750억원, 예수금원금상환 △216억원, 예치금 △328억원
	재정안정화 계정	1,417	1,619	202	(수입) 기타회계전입금 201억원, 예치금회수 1억원 (지출) 도금고 예치금 202억원
지역개발기금		19,968	20,294	326	(수입) 채권매출수입 △600억원, 시군 융자회수금 800억원, 융자회수이자수입 △7.7억원, 예탁금회수금 40억원, 예탁금이자수입 △0.3억원, 예치금회수금 94억원 (지출) 예탁금(도 융자금) △266억원, 예치금 59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	2,559	3,061	502	(수입) 그외수입 1억원, 예치금회수 501억원 (지출) 이차보전금 △161억원, 예치금 663억원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2,461	3,521	1,060	(수입) 예치금회수 1,060억원 (지출) 이차보전금 △54억원, 예치금 1,114억원
기본금융기금		126	126	0	(지출) 청년기회금융지원 8억원, 예치금 △8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39	83	44	(수입) 이자수입 1억원, 도비 사용잔액 0.6억원, 기술료 0.1억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42억원 등 (지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 2억원, 도금고 예치금 42억원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909	1,018	109	(수입) 예치금 회수 109억원 (지출) 예치금 109억원
식품진흥기금		206	232	26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시도비보조금환수입 △1억원, 과징금 등 △10억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4억원, 예치금회수 16억원 (지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등 정책사업 4건 △25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70억원, 도금고예치 △19억원
주거복지기금		275	268	△7	(수입) 기타회계전입금 △15억원, 기금전입금 6억원,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2억원 (지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9억원, 도금고 예치 2억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492	382	△110	(수입) 배당금수입 △110억원, 예치금 회수 0.1억원 (지출) 도금고 예치금 △116억원, 기금전출금 6억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200	170	△30	(수입) 일반회계전입금 △35억원, 이자수입 5억원 (지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182억원, 예치금 152억원
노동복지기금		52	29	△23	(수입) 보조사업 반납액·이자 및 예치금 회수·이자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4억원 (지출) 예치금 △23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4	51	7	(수입) 예치금회수 7억원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10억원, 예치금 1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7	20	3	(수입) 예치금회수 3억원 (지출) 예치금 3억원
※ 12개 14종은 변동 없음.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융자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대부분의 자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지출은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일정한 융자조건에 따라 道가 상환해야 하는 일종의 채무부담행위 성격의 자금임.**
 -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예탁금 잔액은 '26년 제2회 추경안에서 추가로 융자한 750억원을 포함하여 총 1조 6,612억원으로 매년 일반회계 재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일반회계 융자 세부내역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750억원이며, '26년 본예산 미편성분 996억원 중 750억원을 융자로 마련하는 것임.
- '28년 이후 상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 운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道 융자를 통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현황 및 회수계획²⁷⁾ >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이자제외)	예탁금 및 회수계획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이후
예탁금 (통합계정→ 일반회계)	16,612	4,550	-	1,052	1,548	6,653	2,809	-	-	-	-	-
회수계획 (일반회계→ 통합계정)	16,612	-	2,750	-	600	600	951	867	3,084	3,670	3,154	936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 마.2)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목적으로 함.
 - 2026년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말 조성액 1,411억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201억원과 이자수입 7억원을 더한 총 1,619억원 중 1,11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지방채 이자 170억원을 납부하여 2026년말 조성액은 332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도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38억원 중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액²⁸⁾ 201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음.

< 최근 3년 재정안정화계정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²⁹⁾ >

(단위 : 억원)

연도	연초 보유액 (a)	수 입		지 출	연말 보유액 (a+b+c-d)
		전입액(b) (일반회계 ⇒ 재정안정화 계정)	이자수입 등(c)	전출액(d) (재정안정화계정 ⇒ 일반회계)	
2024	4,170	623	53	2,792	2,054
2025	2,054	972	28	1,642	1,411
2026	1,411	201	7	1,287 (지방채 이자납부 170 포함)	332

* 2026년말 보유액은 제2회 추경안 반영 금액임.

- 최근 3년간 재정안정화계정의 보유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초 4,170억원에서 2026년말 332억원으로 크게 축소되었음**. 세입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계정의 적정 규모 유지와 안정적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8) 순세계잉여금(법정경비 제외)의 30% 이상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 다.

1. 경기도 지방채(일반채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경기도 일반채무(총채무) 잔액은 '26년 제2회 추경 기준으로 6조 1,768억원으로 전년도 6조 1,357억원 대비 411억원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6%임.

< 道 채무 현황(시군 제외)³⁰⁾ >

(단위 : 억원, %)

구분	2025년	2026년*		비고
	채무잔액	채무잔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일반채무(총채무)	61,357	61,768	14.6%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확정액의 잔액기준
일반채무(순채무)	54,455	56,962	13.5%	
관리채무	61,958	62,322	14.8%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임차료

* '26년 제2회 추경발행예정액 기준

- 세부적으로, 지역개발채권(지역개발기금) 발행액 4조 5,158억원, 지방채(모집공채 및 금융기관채) 발행액 1조 6,610억원으로, 전체 채무 중 지역개발채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6년도 지방채 발행·상환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1조 3,880억원을 발행하고 1조 3,469억원을 상환하여 연말 채무잔액은 411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지방채의 경우 '2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을 통해 모집공채 7,18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최근 지방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9번-가

< '26년도 지방채 발행 총괄 현황³¹⁾ >

(단위 : 억원)

구 분	'25년말 발행잔액(A)	'26년도 증감액(B)			'26년 말 최종잔액 (C=A+B)	비 고
		소계(a-b)	발행(a)	상환(b)		
합 계	61,357	411	13,880	13,469	61,768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51,927	-6,769	6,700	13,469	45,158	
지방채 발행액	9,430	7,180	7,180	0	16,610	
'25년 본예산 모집공채 (3년거치 일시상환)	2,099	0	0	0	2,099	
'25년 본예산 모집공채 (5년거치 일시상환)	2,731	0	0	0	2,731	
'25년 제3회 추경 금융기관채 (2년거치 8년 분할상환)	4,600	0	0	0	4,600	
'26년 본예산 모집공채 (3년거치 일시상환)	0	2,985	2,985	0	2,985	
'26년 본예산 모집공채 (5년거치 일시상환)	0	2,217	2,217	0	2,217	
'26년 제1회 추경 모집공채 (5년거치 일시상환)	0	1,978	1,978	0	1,978	

- 한편, 경기본청의 관리채무상환비율은 '22년 4.31%에서 '23년 7.27%, '24년 8.3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유형평균 6.47% 및 전국평균 3.52%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근 3년 연속 관리지표상 '부진'으로 평가되고 있어 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에 필요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관리채무상환비율 현황(최근3개년)³²⁾ >

(단위 :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관리채무상환비율 (하향지표)	4.31	7.27	8.39	6.47	3.52
관리지표	부진	부진	부진	-	-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8번-가

32) FY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p168

- 관리채무상환비율 상승에는 세수 감소에 따른 경상적 일반재원의 감소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발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특히 '16년 ~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개발채권 감면 종료 후, '21년부터 발행액이 상환액을 크게 상회하면서 채무잔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26년에는 발행액 6,700억원, 상환액 1조 3,469억원으로 발행액 보다 상환액이 6,769억원 많아 지역개발채권 잔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개발채권 연도별 채권발행 및 상환 내역³³⁾ >

(단위 : 억원, %)

구 분	발행 및 상환내역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발행액과 상환액 차액 ((a)-(b))	2,341	5,270	-3,466	-3,627	-4,529	-4,061	11,419	9,249	6,706	4,781	2,079	-6,769
발행액(a)	9,343	2,022	3,356	3,503	3,492	5,277	13,466	12,634	10,347	8,302	7,385	6,700
상환액(b)	7,002	7,292	6,822	7,130	8,021	9,338	2,047	3,385	3,641	3,521	5,306	13,469
발행금리 (%)	2.0 / 1.5	1.5 / 1.25	1.25	1.25	1.25 / 1.05	1.05	1.05	1.05	2.5	2.5	2.5 / 2.0	2.0

- 다만, 지역개발채권 잔액이 감소하는 것과 별개로 '25년 이후 추가 발행된 지방채는 당해연도 세입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나, 향후, 원금 및 이자 상환이라는 재정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발행 규모와 용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신규 지방채 발행이 계속될 경우 향후 재정운용의 가용재원을 제약하여 필수적인 복지·민생사업 등의 자원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과 상환계획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3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라-5)

- 더욱이, 「지방재정법」 제11조가 지난 25년 11월 11일 개정·시행³⁴⁾ 되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으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이라 함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전혀 예측 못하였던 긴급한 사업으로, 회계연도 중 발생한 돌발적 사항에 한함.
 - 예를들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대규모 소송패소로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불하여 할 비용 발생 대응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나,
 - ‘자체 사업의 연도 중 증액’ 또는 ‘통상적인 국비사업의 매칭비’, ‘지자체 자체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함.³⁵⁾
- 제2회 추경안 사업 중 The 경기패스(국비/지원) 280억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274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자체/지원) 223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자체/직접) 21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자체/지원) 115억원, 주거급여(국비/지원) 77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국비/지원) 20억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균특/직접) 9억원 등의 지방채 발행이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시행 25.11.11.)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35)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p12.~13.

▶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이라 함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전혀 예측 못하였던 긴급한 사업으로, 회계연도 중 발생한 돌발적 사항에 한함
 사례) (○)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대규모 소송패소로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불하여 할 비용 발생 대응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자체 사업의 연도 중 증액 또는 통상적인 국비사업의 매칭비, 지자체 자체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
 ■ (공통사항) 지방채 발행은 세입에 맞추어 세출조치·여유재원 등을 우선 검토 후 고려
 ▶ 여유재원 진단 → 세입에 맞춰 세출구조조치 → 지방채 발행 검토

-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방채 발행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같음**할 수 있으나,
- 최근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확대되고 관리채무상환비율 역시 유형 평균 및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규모, 발행 목적, 상환재원 및 향후 재정부담에 대하여 **의회와 적극적인 사전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의 일부로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별도 자료 제출 및 사전 설명, 사업별 발행 필요성 및 상환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별도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6년도 2회 추경 지방채 발행 예정 현황³⁶⁾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기준)
합계		0	※ 추가 지방채 발행액은 없음
1	청소년과	△5,622,000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자체/직접)
2	도로정책과	△9,000,000	실촌-만선 국지도건설(광주)(자체/직접)
3	도로정책과	△922,000	와부-화도 국지도건설(남양주)(자체/직접)
4	도로정책과	△500,000	오남-수동 국지도건설(남양주)(자체/직접)
5	도로정책과	△8,300,000	군내-내촌 국지도건설(포천)(자체/직접)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18번-라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기준)
6	도로정책과	△5,852,000	장지-남사 국지도건설(화성,용인)(자체/직접)
7	도로정책과	△2,000,000	옥계~상리 국지도건설(연천)(자체/직접)
8	도로정책과	△3,000,000	운양-하성 국지도건설(김포)(자체/직접)
9	도로정책과	△19,000,000	부곡-부곡 국지도건설(양주)(자체/직접)
10	도로정책과	△3,348,428	금릉-조리 국지도건설(파주)(자체/직접)
11	도로정책과	△8,313,000	성환-입장 국지도건설(안성)(자체/직접)
12	도로정책과	△6,000,000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13	도로정책과	△4,700,000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14	도로정책과	△700,000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15	도로정책과	△1,000,000	여주 처리-우만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16	도로정책과	△6,500,000	광주 무갑-광동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17	도로정책과	△1,000,000	용인 완장-서리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18	도로정책과	△800,000	화성 발산-수면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19	도로정책과	△800,000	이천 관리-광주 유정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20	도로정책과	△1,000,000	이천 금당-선읍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21	도로정책과	△800,000	안성 양기-양지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22	도로정책과	△800,000	용인 유운-매산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23	도로정책과	△770,000	파주 방축-양주 비암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24	도로정책과	△150,000	안성 일죽-도계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25	하천과	△7,000,000	지방하천정비(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전환)(자체/직접)
26	하천과	△90,000	지방하천정비(양평 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전환)(자체/직접)
27	하천과	△1,100,000	지방하천정비(양평 중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자체/직접)
28	하천과	△300,000	지방하천정비(김포 나진포천 하천환경조성사업)(전환)(자체/직접)
29	하천과	△300,000	지방하천정비(김포 나진포천 하천환경조성사업)(자체/직접)
30	하천과	△1,000,000	지방하천정비(가평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전환)(자체/직접)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기준)
31	하천과	△700,000	지방하천정비(용인 매산천)(전환)(자체/직접)
32	하천과	△900,000	지방하천정비(파주 동문천)(전환)(자체/직접)
33	하천과	△250,000	지방하천정비(파주 문산천)(전환)(자체/직접)
34	하천과	△2,000,000	지방하천정비(양주 청담천(2지구))(전환)(자체/직접)
35	하천과	△300,000	지방하천정비(수원 원천리천(2지구))(전환)(자체/직접)
36	하천과	△1,000,000	지방하천정비(성남 운중천)(전환)(자체/직접)
37	하천과	△300,000	지방하천정비(광주 신현천)(전환)(자체/직접)
38	하천과	△1,700,000	지방하천정비(포천 추동천)(전환)(자체/직접)
39	하천과	△1,700,000	지방하천정비(포천 고모천)(전환)(자체/직접)
40	하천과	△600,000	지방하천정비(남양주 구운천 송천1지구)(전환)(자체/직접)
41	하천과	△5,250,000	지방하천정비(파주 동문천)(자체/직접)
42	하천과	△2,900,000	지방하천정비(파주 문산천)(자체/직접)
43	하천과	△3,000,000	지방하천정비(시흥 은행천(2지구))(자체/직접)
44	하천과	△4,480,000	지방하천정비(하남 초이천)(자체/직접)
45	하천과	△990,000	지방하천정비(하남 감이천)(자체/직접)
46	하천과	△5,000,000	지방하천정비(용인 동막천)(자체/직접)
47	하천과	△2,300,000	지방하천정비(광주 신현천)(자체/직접)
48	하천과	△100,000	여주 부평천 지방하천개수사업(전환)(자체/직접)
49	하천과	△500,000	지방하천정비(안성 한천)(자체/직접)
50	도로정책과	△1,286,000	우정-향남 국지도건설(화성)(균특/직접)
51	도로정책과	△858,000	광주-양평 국지도건설(광주,양평)(균특/직접)
52	도로정책과	3,000,000	우정-향남 국지도건설(화성)(자체/직접)
53	도로정책과	4,120,000	안성 공도-양성(1)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54	도로정책과	429,000	장흥-광적 국지도건설(양주)(균특/직접)
55	도로정책과	1,715,000	군내-내촌 국지도건설(포천)(균특/직접)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기준)
56	철도건설과	2,143,000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국비/직접)
57	복지사업과	△2,030,583	경기도형 긴급복지(자체/지원)
58	복지정책과	△3,500,000	고유가 피해지원금(국비/지원)
59	노인복지과	△21,656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국비/직접)
60	아동돌봄과	△23,078	자립지원전담기관 보조인력 지원(국비/직접)
61	아동돌봄과	△28,848	방과 후 야간 연장 돌봄보조 인력지원(국비/지원)
62	아동돌봄과	△19,232	방과 후 야간 연장 돌봄보조 인력지원(국비/직접)
63	자원순환과	464,120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64	건강증진과	11,532,47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전환)(자체/지원)
65	의료자원과	914,000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균특/직접)
66	보건의료정책과	20,740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기금/직접)
67	응급의료과	93,800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기금/지원)
68	장애인복지과	62,182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국비/지원)
69	보육정책과	67,500	어린이집 확충(균특/지원)
70	아동돌봄과	20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비/직접)
71	아동돌봄과	1,25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비/지원)
72	고용평등과	37,819	새일센터 지정운영(균특/직접)
73	고용평등과	3,006	새일센터 지정운영(균특/지원)
74	여성비전센터	6,244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기금/직접)
75	도로정책과	500,000	이천 덕평-매곡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76	도로정책과	1,400,000	남양주 내방-기평 연하 도로확포장공사(자체/직접)
77	복지사업과	27,377,135	의료급여 도비부담
78	건강증진과	22,313,14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자체/지원)
79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1,287,110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자체/직접)
80	산림환경연구소	660,000	바다향기수목원 RE100 태양광 전시온실 조성사업(교부세/직접)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기준)
81	노동정책과	95,715	근로감독 지방위임(국비/직접)
82	친환경농업과	100,000	발작물주산지수급거버넌스운영(기금/직접)
83	청년기획과	105,119	경기도 청년미래센터 운영(고립은둔청년)(국비/직접)
84	청소년과	22,644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지원(기금/직접)
85	보건의료정책과	6,000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국비/지원)
86	정신건강과	5,342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국비/직접)
87	복지사업과	250,250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지원(국비/지원)
88	복지사업과	160,946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국비/직접)
89	장애인자립지원과	25,000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균특/직접)
90	사회적경제육성과	191,348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국비/직접)
91	사회적경제육성과	440,579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국비/지원)
92	아동돌봄과	71,038	틈새돌봄센터 지원(다함께돌봄센터)(균특/지원)
93	아동돌봄과	260,484	틈새돌봄센터 지원(지역아동센터)(균특/지원)
94	축산정책과	22,500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기금/지원)
95	동물방역위생과	63,900	개식용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국비/지원)
96	동물위생시험소	70,257	예방약품 등 지원(인건비)(남부)(국비/직접)
97	북부동물위생시험소	57,098	예방약품 등 지원(인건비)(북부)(국비/직접)
98	기술보급과	180,000	공적방제 손실보상금(국비/직접)
99	기술보급과	900,000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국비/직접)
100	기술보급과	9,750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국비/지원)
101	상하수과	207,856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균특/지원)
102	상하수과	48,800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국비/지원)
103	상하수과	38,400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국비/지원)
104	수질총량과	446,400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비점오염저감사업)(국비/지원)
105	버스정책과	27,992,400	The 경기패스(국비/지원)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기준)
106	산림녹지과	228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국비/지원)
107	주택정책과	7,706,295	주거급여(국비/지원)
108	주택정책과	1,977,150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비/지원)
109	감염병관리과	570,000	국가예방접종 실시(기금/지원)
110	건강증진과	17,742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국비/직접)
111	건강증진과	2,17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기금/지원)
112	건강증진과	8,940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기금/지원)
113	건강증진과	91,599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기금/지원)
114	건강증진과	346,40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금/지원)
115	건강증진과	3,22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기금/지원)
116	건강증진과	375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기금/지원)
117	건강증진과	107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기금/지원)
118	응급의료과	225,000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기금/직접)
119	정신건강과	35,400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국비/지원)
120	정신건강과	4,863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국비/지원)
121	복지사업과	101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균특/지원)
122	복지사업과	8,925	자활근로 지원사업(국비/지원)
123	복지사업과	10,839	지역자활센터 운영(국비/지원)
124	복지사업과	175,000	긴급복지(국비/지원)
125	복지사업과	179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균특/지원)
126	노인복지과	427,476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균특/지원)
127	장애인자립지원과	4,178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국비/지원)
128	여성정책과	16,16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기금/지원)
129	여성정책과	2,077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기금/지원)
130	아동돌봄과	2,64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국비/지원)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발행액(예산액)	사업명(부기명기준)
131	아동돌봄과	437	입양아동 가족지원(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기금/지원)
132	아동돌봄과	2,520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국비/지원)
133	아동돌봄과	17,94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지원)
134	아동돌봄과	42,356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국비/지원)
135	아동돌봄과	80,78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균특/지원)
136	아동돌봄과	416,46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기본운영비, 추가운영비)(균특/지원)
137	아동돌봄과	5,208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균특/지원)
138	축산정책과	19,500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기금/지원)
139	축산정책과	54,000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기금/지원)
140	동물방역위생과	2,0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기금/직접)
141	동물방역위생과	27,090	예방약품 등 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 채혈비)(국비/직접)
142	동물방역위생과	666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기금/직접)
143	동물위생시험소	4,170	예방약품 등 지원(남부)(국비/직접)
144	북부동물위생시험소	4,486	예방약품 등 지원(북부)(국비/직접)
145	정신건강과	170,570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국비/지원)

2. 내부거래 (공통 소관)

□ 총 괄

- 내부거래는 ①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계정과 일반회계 간 예탁금(道 용자금)·예수금, ②특별회계 및 기금 간 예탁·예수금으로 구성되며,
- 향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상환해야 할 원금은 '26년 현재 총 5조 1,157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잔액 3조 8,495억원, '통합계정' 상환액 잔액 1조 2,662억원임.

<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계정 상환계획³⁷⁾ >

(단위 : 억원)

구 분	원금 (이자제외)	상환계획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이후
합계	51,157	4,260	4,400	8,724	9,530	8,311	6,093	4,993	4,846
지역개발기금	38,495	3,309	3,533	5,640	5,860	5,157	5,157	4,993	4,846
2025년까지	33,206	3,309	3,533	5,640	5,805	4,154	4,154	3,990	2,621
2026년도	5,289	-	-	-	55	1,003	1,003	1,003	2,225
통합계정	12,662	951	867	3,084	3,670	3,154	936	-	-

3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라-2) / 1차-7번-마-2)

□ 지역개발기금-일반회계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채권발행을 통해 주민복지증진·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임.³⁸⁾
-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 용자는 '20년부터 '26년까지 총 4조 3,461억 원이며, 이 중 '20~'21년에는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재정수요에 1조 6,543억 원이 용자되었고, '24년부터는 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용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24년 1조 587억 원, '25년 1조 224억 원, '26년 5,289억 원 등 '24~'26년 3년간 총 2조 6,100억 원이 일반회계에 용자되어, 전체 일반회계 용자액의 60.1%가 최근 3년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용자 내역³⁹⁾ >

(단위 : 억 원)

구 분	원금(이자제외)	용자내역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72,101	2,042	10,833	10,788	13,244	7,737	11,944	10,224	5,289
일반회계	43,461	-	8,288 ^①	8,255 ^②	-	818 ^③	10,587 ^④	10,224 ^⑤	5,289 ^⑥
특별회계	430	160	40	-	-	75	155	-	-
시군	9,696	1,882	2,505	2,533	1,144	430	1,202	-	-
공사	18,514	-	-	-	12,100	6,414	-	-	-

① '20년 본예산 신청사건립 1,000억 원, '20년 1차 재난기본소득 6,788억 원, '20년 기금변경 소비 지원금 500억 원

② '21년 1차 2차 재난기본소득 8,255억 원 / ③ '23년 1회 추경 SOC 818억 원

④ '24년 본예산 10,315억 원, '24년 1차 271억

⑤ '25년 본예산 10,988억 원, '25년 2차 △677억 원, '25년 3차 △86억 원

⑥ '26년 본예산 5,555억 원, '26년 2차 △266억 원

※ 용자 조건 : ('19년) 1.75~2%, ('20~'22년) 1.5%, ('23~'24년) 3%, ('25년) 2.5~3%, ('26년) 2.5%

38) 상수도 채권발행(1979) → 공기업특별회계 설치(1990) → 지역개발기금 전환(2017)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라-1)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운용되는 기금인 만큼, 일반회계에 대한 대규모 융자가 지속될 경우 기금의 상당한 재원이 일반회계에 장기간 묶여 시군 및 공기업 등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가용재원을 제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한편, 일반회계 융자잔액은 '26년 제2회 추경 기준 3조 8,49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8년부터 '32년까지 매년 5천억원 이상의 원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최근 확대된 융자가 향후 일반회계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음.

<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계획⁴⁰⁾ >

(단위 : 억원)

구 분	원금 (이자제외)	상환계획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이후
道 융자금 회수계획	38,495	3,309	3,533	5,640	5,860	5,157	5,157	4,993	4,846
2025년까지	33,206	3,309	3,533	5,640	5,805	4,154	4,154	3,990	2,621
2026년도	5,289	-	-	-	55	1,003	1,003	1,003	2,225

- 이는,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향후 세입 여건에 따라 상당 규모의 재원을 매년 별도로 확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6년에도 일반회계에 5,289억원을 추가 융자하는 한편, 기존 융자금의 상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일반회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융자·상환계획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일반회계의 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라-2)

□ 통합계정-타기금/특별회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융자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2025년 5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으로 기존 부칙 제3조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특례’가 삭제됨에 따라, 그동안 통합계정 예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도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적 자금운용을 통해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까지 통합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폭넓게 예수하면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2026년 말 기준 예수금 최종잔액은 1조 2,295억원으로 전망되며, 주요 예수금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646억원, 소방안전특별회계 1,209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창업및경쟁력강화) 1,000억원, 재난관리기금 1,239억원, 재해구호기금 1,470억원 등이 있음.
- 다만, 통합계정으로의 자금 집중은 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통합계정의 예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개별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장기간 통합계정에 체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예탁자금의 운용 현황과 회수 가능성, 개별 회계·기금의 자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계정 예수금 수입 및 상환계획⁴¹⁾ >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명	'25년 말 예수금 잔액(a)	'26년 예수금 수입(b)	'26년 말 예수금 원금 상환액(c)	'26년 말 예수금 최종잔액(a+b-c)
계		11,691	1,060	456	12,295
특별회계	합 계	6,103	754	426	6,431
	학교용지부담금	3,585	261	200	3,646
	광역교통시설	281	112	-	393
	지역자원시설세	46	24	-	70
	소방안전	1,019	190	-	1,209
	도시재생	-	69	-	69
	(공기업)판교테크노밸리	1,172	98	226	1,044
기금	합 계	5,588	306	30	5,864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및경쟁력강화)	1,000	-	-	1,000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763	186	-	949
	남북교류협력기금	340	-	-	340
	기본금융기금	380	-	-	380
	환경보전기금	180	50	-	230
	사회적경제기금	37	-	20	17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39	-	-	39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원사업)	40	-	10	30
	식품진흥기금	100	70	-	170
	재난관리기금	1,239	-	-	1,239
	재해구호기금	1,470	-	-	1,470

※ 2026년 예수금 수입(b)은 26년 제2회 추경(안) 포함

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마-1)

□ 통합계정-일반회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융자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은 '21~'26년까지 총 1조 6,612억원 융자되었으며, 특히 '25년도에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5.5.7. 시행) 개정·시행된 이후 6,653억원이 융자되어 '24년 1,548억원 대비 5,105억원(329.8%)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융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예탁금 현황 및 회수계획⁴²⁾ >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이자제외)	예탁금 및 회수계획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이후
예탁금 (통합계정→일반회계)	16,612	-	4,550 ¹⁾	-	1,052 ²⁾	1,548 ³⁾	6,653 ⁴⁾	2,809 ⁵⁾	-	-	-	-	-
								합계 12,662억원					
회수계획 (일반회계→통합계정)	16,612	-	-	2,750	-	600	600	951	867	3,084	3,670	3,154	936

1) 2차 재난기본소득

2) 1,052억('23년 1회 추경)

3) 948억('24년 본예산), 600억('24년 1회 추경)

4) 2,550억('25년 본예산), 803억('25년 1회 추경), 2,000억('25년 2회 추경), 1,300억('25년 3회 추경)

5) 2,059억('26년 본예산), 750억('26년 2회 추경안)

4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7번-마-2)

- '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통합계정의 자금 규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 대한 용자도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임.
- 이에,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일반회계에 대한 용자 확대가 개별 회계·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수행이나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25년 이후 일반회계 용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계정이 일반회계의 상시적인 부족재원 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통합계정을 통해 일반회계에 용자된 자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 회계·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일 수 있는 만큼, **일반회계 용자 시 해당 회계·기금의 자금수요와 향후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통합계정의 자금집중 및 일반회계 용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기후대응기금 및 환경보전기금 통합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 **환경보전기금**은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 및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민간 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을 위해 **1999년 설치됨**.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제4항 및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2023년 설치됨**.

< 기후대응기금과 환경보전기금 비교 >

(단위: 억 원)

구 분	환경보전기금(용자성기금)	기후대응기금(사업성기금)	비고
설치근거 (법령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2조 및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년도(존속기한)	1999년(2029년)	2023년(2028년)	
기금 목적	-비영리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환경교육사업 운영 지원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의한 자연환경사업 등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화사업 지원 -RE100 기업 지원 체계 구축,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지원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사업 지원 등	
기금 주요 사업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2.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운영 3. 경기생태미당 조성 4.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5.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 6. 경기 갯대종 조형물 제작 7. 경기생태자원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8. 경기생태자원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9.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10. 광역 도시생태환경지도 상시 갱신·관리	1.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2. 경기 RE100 선도사업 3.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4.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5.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6.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운영	※'26년 본예산 기준
기금 재원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타수입	-지역지원시설에 특별회계 전입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기타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금 제외
'25년 연도말 조성액	309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230억원 포함/ 용자금 미회수채권 79억원 불포함	74억원	
기금관리부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 설치근거에 따른 통폐합 가능 검토

- 기금은 중앙정부의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법정기금**(법정의무기금 및 법정 재량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는 **자체기금**으로 구별됨.
- 경기도 **법정기금**은 ①**법정의무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고향사랑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6개 기금, ②**법정재량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임.⁴³⁾
- 기후대응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은 **자체기금**으로써 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신설·폐지·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타 지역 및 경기도 유사사례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舊 전라북도)는 '23년 10월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부칙에 따라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4년 1월 1일에 폐지하고,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기후대응기금'의 계정으로 승계함.
- **(경기도)** 경기도는 '20년 8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설치, 기존 운영하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진흥기금' 내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구분·운영하는 것으로 통합함.⁴⁴⁾

43)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개요(하)

44)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경기연구원 2019 박충훈 외) 농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이 다르고, 지원분야 역시 시설 및 경영자금 용자(농업발전기금)와 신기술 보급 및 기술지원 사업(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상이한 바, 통합 운영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일반회계사업과 유사중복 사례 검토

- **환경보전기금**의 경우,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융자금 등 ②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및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일반회계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시되어 '23년도에 융자사업인 '중소기업 환경보전사업 지원'은 일몰되었으며 '26년 7월말 기준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은 없음.**
- 기금의 통폐합을 검토할 때, 기금간 유사 중복 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의 유사 중복사업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폐합 방안 검토(안)

- **(기금의 통합·폐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3호에 따라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음.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하고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할 경우 기존 폐지된 기금 사업과 재원 조성의 목적이 통합된 기금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함.**
- **(포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음. 경기도는 2020년 농업발전기금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하나의 포괄기금으로 설치 하는데, 지원대상이 상이하고, 시설 및 경영자금 융자(농업발전기금)와 신기술 보급 및 기술지원 사업(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성격이 상이하다는 이유였으며,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는데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보임.**

○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제언

- 경기도 및 경기연구원은 道에서 운용 중인 기금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6년과 '19년 두 차례 '경기도 기금 통폐합 정비 방안 연구',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 2019년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기금 일부를 정비하였음.

〈 2019년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⁴⁵⁾ 〉

사업성기금 정비대상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지원),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19년 운영실적으로 추후 판단
유사 기금·특 별회계 정비방안 성방안	기금간 통합	농업발전기금/농촌지도자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기금-특별회계 통합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특별회계 전환	에너지기금
폐지		통합관리기금
일몰		신청사건립기금(존속기한 : 2020.12.31.)

- 2026년 기금은 24개(29종)로, 2019년 이후 새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⁴⁶⁾ 등 8개 및 기존 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소요가 제기됨에 따라, 道는 기금의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5) 민선7기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경기연구원 2019 박충훈 외)

46) 통합재정안정화기금(2020), 기본금융기금(2021), 농업농촌진흥기금(2020), 말산업육성기금(2019), 개발이익도민환원 기금(2021), 고향사랑기금(2023), 기후대응기금(2023), 여성가족기금(2025)

4. 지방이양사업 (공통 소관)

○ 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양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율*:부가가치세의 25.3% (부가가치세 총액 100% = 지방소비세25.3% + 부가가치세74.7%)

* 5%(10년) ⇨ 11%(14년) ⇨ 15%(19년) ⇨ 21%(20년) ⇨ 23.7%(22년) ⇨ 25.3%(23년)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1단계 전환사업		이양 결정	←	'20년 이양, 3년간 보전	→	←	4년간 추가 보전	→	
2단계 전환사업	1차			이양 결정	←	'22년 이양, 5년간 보전	→		
	2차				이양 결정	←	'23년 이양, 4년간 보전	→	

○ '20년 1단계, '22~'23년 2단계에 걸쳐 총 64개 사무가 이양되었으며, '26년 제2회 추경 기준 전체 편성규모는 6,293억원으로 이 중 국비 보전금 4,724억원, 도비 1,569억원임.

< 1/2단계 재정분권(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따른 지방이양사무(전환사업)⁴⁷⁾ >

(단위: 억원)

구 분		계	1단계 ('20년이양)	2단계 ('22~'23년이양)	비 고
이양사무(개수)		64	28	36	부처 세부사업 기준
편성규모 (억원)	계	6,293	2,914	3,379	
	국비 (보전금)	4,724	1,906	2,818	
	도비	1,569	1,008	561	

※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준

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3번-가

- 지방이양사업의 상당수가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방하천 정비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인구·복지수요 및 사업대상 확대 등에 따라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26년 본예산 기준 주요 전환사업 규모도 지방하천 정비 1,579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98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5억원 등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음.
- 당초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일환이었으나, 실제 사업수요가 당초 이양 당시보다 확대될 경우 지방소비세 증가분 및 한시적 국비 보전만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음. 특히 **일부 전환사업에서 지방채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2단계 전환사업 중 지방채가 투입되는 사업을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 사업비 721억원 중 도비 498억원, 지방채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총 사업비 581억원 중 도비 355억원, 지방채 226억원으로 증액된 사업비 전액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원 보전이 사업의 실제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모두 보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전환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방세 등 자체재원뿐만 아니라 지방채에 의존해야 하는 재정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단계 지방이양사업(전환사업) 중 지방채 사업 현황⁴⁸⁾ >

(단위 : 백만 원)

연 번	부서명	회계 구분	사업명 (부기명 기준 작성)	본예산+1회 추경			2회 추경안		
				계	도비	지방채	계	도비	지방채
보건건강국			합 계	96,336	85,309	11,027	130,182	85,309	44,873
			소 계	49,776	49,776	0	72,089	49,776	22,313
1	건강증진과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9,776	49,776	-	49,776	49,776	-
2	건강증진과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지방채)	-	-	-	22,313	-	22,313
			소 계	46,560	35,533	11,027	58,093	35,533	22,560
3	건강증진과	일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533	35,533	-	35,533	35,533	-
4	건강증진과	일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지방채)	11,027	-	11,027	22,560	-	22,560

- 따라서 전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원 보전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대상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제 소요재원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에서는 국비 보전액을 초과하는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지방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수요와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지방이양사업은 단순히 이양 당시의 국비 보전 규모만을 기준으로 재정분권의 재원배분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양 이후 실제 사업수요 및 사업비 증가분까지 고려하여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환사업의 사업비 증가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경우 향후 원리금 상환이라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의 재원 보전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보전 방안⁴⁸⁾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2차-3번-나

5. 10억원 이상 감액 및 90%이상 감액 편성 사업 검토 (공통 소관)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감액사업은 2,057개 사업(부기명 기준) **5,465억원**으로 집행저조, 유사중복사업 재검토, 사업량 조정, 집행잔액 등을 기준으로 감액 편성하였음.
- 그중, 기정예산 대비 **‘10억 이상 및 9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31개 사업(전체 2,057개 대비 1.5%)로, **1,271억원을**(전체 5,465억원 대비 23.3%)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 감액사유는 ①단순한 집행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②사전절차 미이행·사업시기 조정, ③관련기관 자원분담 및 사업추진 지연, ④사업 재검토 및 사업량 조정, ⑤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사업 일몰·추진방향 변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손실보전금)’**은 경기신보의 출연금 미신청에 따라 **16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유사사업인 비즈플러스카드 추진에 따라 道 자체사업 **3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각각 100% 감액** 편성하였음.
- (사전절차 미이행·사업시기 조정) **‘혈액검사 및 시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은 경기도의료원을 사업수행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의회 사전동의가 완료되지 않아 연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60억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사회보장협의, 시군 수요조사 및 사전동의 등 절차 이행 후 ’27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각각 50억원을 감액**하였음.
- (관련기관 자원분담 및 사업추진 지연) **‘강동하남남양주선 및 송파하남선 광역철도’**는 실시설계 등 사업절차는 진행 중이나 관련기관과의 사업비 분담 협약 지연으로 LH부담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각각 103억원, 2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향후 설계준공 등에 따라 재편성할 계획임.

- (사업 재검토 및 사업량 조정)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은 착공 예정사업 재검토 방침에 따라 추진을 보류하면서 **59억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포장 유지관리’**는 굴착공사 등 공사구간 일부 중복 및 포장보수공사 물량 재조정에 따라 **62억원을** 감액하였음.
-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조정) **‘RE100 태양광 설치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착수하였으나 道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공사 추진을 중단하고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 AI 휴먼노믹스 박람회’** 역시 道 재정부담을 고려한 행사성 예산 삭감으로 **19억원을** 감액하였음.
- 이와 같이 21개 사업은 대부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정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감액 규모가 1,075억원으로 전체 감액액의 약 20%에 달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자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액 감액되는 사업 중에는 사업 자체가 폐지·일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전절차 미완료, 관련기관 협의 지연, 사업추진 보류 등 사업 외적 요인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워진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관계기관과의 자원분담 협의, 실제 사업 착수 가능시기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대규모 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감액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10억원 이상 및 90%이상 감액 편성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명	기정액	2추(안)	감액	감액률
		31건		129,973,800	2,860,702	- 127,113,098	
1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오테 역시문화공간 조성	시설비	1,750,000	0	-1,750,000	-100.0%
2	기획전략담당 관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700,000	0	-1,700,000	-100.0%
3	기획전략담당 관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자치단체지분 보조	1,500,000	0	-1,500,000	-100.0%
4	주택정책과	경기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5,000,000	0	-5,000,000	-100.0%
5	주택정책과	경기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이차보전금	5,000,000	0	-5,000,000	-100.0%
6	보건의료정책 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500,000	0	-1,500,000	-100.0%
7	보건의료정책 과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병암 검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6,000,000	0	-6,000,000	-100.0%
8	문화정책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자치단체지분 보조	6,000,000	500,000	-5,500,000	-91.7%
9	예술정책과	문예회관 건립지원	자치단체지분 보조	2,000,000	0	-2,000,000	-100.0%
10	농업정책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사회보장적수 혜금	1,155,000	0	-1,155,000	-100.0%
11	해양수산과	화성시 석천항 내 부잔교 설치 및 선착장 승상 공사	자치단체지분 보조	1,200,000	0	-1,200,000	-100.0%
12	평생교육과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도 비법정전출금	5,000,000	0	-5,000,000	-100.0%
13	청년기획과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사회보장적수 혜금	1,440,000	0	-1,440,000	-100.0%
14	청소년과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지방채)	시설비	4,632,000	0	-4,632,000	-100.0%
15	청소년과	시흥시 신천 청소년복합센터	자치단체지분 보조	2,000,000	0	-2,000,000	-100.0%
16	가족정책과	경기북부공유예약장	자치단체지분 보조	1,000,000	0	-1,000,000	-100.0%
17	도로정책과	양주 부곡-부곡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20,000,000	1,000,000	-19,000,000	-95.0%

연 번	부서명	사업명(부기명)	통계목명	기정액	2추(안)	감액	감액률
18	도로정책과	광주 무갑-광동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7,000,000	500,000	-6,500,000	-92.9%
19	도로정책과	이천 금당-선읍 도로확포장(지방채)	시설비	1,000,000	0	-1,000,000	-100.0%
20	하천과	파주 동문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시설비	5,000,000	0	-5,000,000	-100.0%
21	하천과	광주 신현천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시설비	2,400,000	100,000	-2,300,000	-95.8%
22	광역교통정책 과	고령자 인지능력검사 차량	민간자본사업 보조	2,200,000	0	-2,200,000	-100.0%
23	택시교통과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및 도입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098,800	0	-2,098,800	-100.0%
24	철도건설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시설비	2,480,000	0	-2,480,000	-100.0%
25	철도건설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시설비	9,500,000	0	-9,500,000	-100.0%
26	축산진흥센터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시설비	2,020,000	24,750	-1,995,250	-98.8%
27	지역금융과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금	16,350,000	0	-16,350,000	-100.0%
28	지역금융과	경기 소상공인 더함내GO카드 지원	출연금	3,000,000	0	-3,000,000	-100.0%
29	AI프런티어정 책과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1,200,000	0	-1,200,000	-100.0%
30	AI프런티어정 책과	경기 AI 휴먼노믹스 박람회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2,000,000	100,000	-1,900,000	-95.0%
31	도로건설과	도로 포장 유지관리	시설비	6,848,000	635,952	-6,212,048	-90.7%

6.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제외) 감액 검토 (공통 소관)

- 道の 2026년 제2회 추경(안)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 규모는 총 **△766억원** (4,912억원 → 4,146억원, **△15.6%**) **감액** 편성하였음.
 - 경기신용보증재단 △194억원, 경기관광공사 △96억원, 경기아트센터 △77억원, 시장상권진흥원 △66억원, 사회서비스원 △63억원, 경기연구원 △57억원,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 46억원 등임.
- 감액 대상 24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순수 감액이 이루어진 기관은 19개소임. 여건 악화 대응 차원의 세출 구조 조정이라는 道の 기본 방향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별 기관별 감액률과 집행률을 대비하여 보면, 단순 세입 여건에 따른 일률적 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편차가 확인됨.
- 주요감액 내역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64억원** 감액으로, 출연금 222억원 중 △194억원(87.0%)이 감액되어 사실상 출연금 대부분이 삭감됨.
 - 주요감액사유는 경기신보의 출연금 미신청에 따라 道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하였으며 차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밝힘.
 - 손실보전금은 道 특례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손실을 보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 미신청이 재단 측의 보증 공급 여력 축소나 특례 보증 사업 자체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며, 차년도 반영이 지연될 경우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道の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323억원 중 △96.2억원(29.8%)이 감액되었고 집행률은 38.7%로 평균(42.5%)을 하회함.

- 주요감액은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 316억원 중 △95억원을 감액하여 출연금 29.8%를 감액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여타 기관 대비 상당히 높은 감액 비율로, 단순 세입 여건에 따른 평균 조정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로 보임.
- 주요감액 세부내용을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 등(△16.3억원), 평화누리 관리 운영 등(△4.4억원), 이산문화제 등 사업비(△45.9억원), 일상속브랜드홍보 등 홍보 (△22.3억원), 관광플랫폼·실태조사(△2.1억원), 운영비(△4.1억원) 감액함.
- 경기관광공사는 통상 인건비·기본운영비가 총 출연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관광 진흥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구조임. 이러한 자원 구조를 감안할 때, 출연금의 30%에 달하는 감액이 사업비 위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된 관광 진흥사업의 정상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소명이 필요함.
- 아울러 사업비 비중이 낮은 자원 구조에서 대규모 관광 진흥사업비의 감액으로 향후 공사의 사업 기획 및 집행 역량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감액이 일회성 조정인지 아니면 구조적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道 차원의 중장기 방향 제시도 함께 요구됨.

○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당초 178억원에서 57억원(32.0%)을 감액하였으며, 집행률도 57.5% 수준으로 나타남. 주요 감액사유는 자체기금 23억원 및 자체수입 증가 10억원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원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道 출연금 부담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출연금 감액 규모가 당초 출연금의 32.0%로 상당한 수준인 만큼, 자체수입 증가분이 일시적인 수입 증가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출연금 감액이 향후 연구사업 및 정책 세미나·포럼 추진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료원**(△8.3억원, 2.6%)은 집행률이 77.6%로 높은 수준으로 감액폭을 최소화하여,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한 신중한 편성으로 평가됨.
- **경기아트센터**(△76.8억원, 13.9%)는 집행률이 83.4%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낮은 감액률이 집행 실적과 부합하는 편성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은 ①**전체적으로는 세입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세출 조정이라는 방향성이 인정되나**, ②**기관별 감액률이 실제 집행 실적(집행률)과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감액 편성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③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이 교부액·집행액 자료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액의 실질적 타당성을 검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취약 계층 서비스와 직결된 기관의 감액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 차질 방지를 위한 道 차원의 모니터링 계획을 병행 제시할 것을 주문함.**

* 경기관광공사·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저집행률·고감액 기관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미래성장산업국)과 같은 저집행률·저감액 기관이 혼재

< 공공기관 출연금 감액 내역⁴⁹⁾ >

(2026. 7. 31. 기준, 단위: 백만원, %)

공공기관명	'26년 본예산 + 1회 추경 도 출연금 (a)	제2회 추경(안) 출연금(b)	증감액 (c=b-a)	도 교부액	공공기관 집행액(d)	집행률(d/a)
총 계	491,255	414,685	△76,570	243,488	208,953	42.5
○ 지방공기업(4개)						
경기주택도시공사	-	-	-	-	-	-
경기평택항만공사	-	-	-	-	-	-
경기교통공사	-	-	-	-	-	-
경기관광공사	32,256	22,640	△9,616	13,150	12,492	38.7
○ 출자·출연기관(24개)						
경기문화재단	23,882	23,156	△726	19,057	14,941	62.6
한국도자재단	14,738	11,473	△3,265	7,800	6,896	46.8
경기도수원월드컵 경기장관리재단	-	-	-	-	-	-
경기콘텐츠진흥원	23,234	21,586	△1,648	15,034	13,622	58.6
경기아트센터	55,076	47,394	△7,682	27,112	22,611	83.4
경기연구원	17,752	12,078	△5,674	10,282	10,218	57.5
경기신용보증재단	22,230	2,880	△19,350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실)	34,920	33,344	△1,576	20,520	18,244	5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국제협력국)	8,478	7,878	△600	4,900	4,538	53.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산업국)	2,700	2,540	△160	2,200	744	28
경기도주식회사	-	-	-	-	-	-
경기도일자리재단	33,900	33,900	-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9,625	33,027	△6,598	-	-	-

4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1차-21번

공공기관명	'26년 본예산 + 1회 추경 道 출연금 (a)	제2회 추경(안) 출연금(b)	증감액 (c=b-a)	道 교부액	공공기관 집행액(d)	집행률(d/a)
킨텍스	-	-	-	-	-	-
경기테크노파크	3,812	3,752	△60	3,212	2,130	55.9
경기대진테크노파크	820	765	△55	820	580	70.7
차세대융합기술원	6,428	6,428	-	4,200	4,200	65.3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5,392	14,392	△1,000	7,537	7,167	46.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9,229	18,028	△1,201	12,700	10,732	55.8
경기복지재단	14,745	13,252	△1,493	9,198	8,486	57.6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2,716	6,455	△6,261	9,620	3,644	29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0,015	9,232	△783	5,000	4,618	46.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9,881	8,961	△920	5,400	4,890	49.5
경기도의료원	31,946	31,120	△826	28,923	24,797	77.6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42,701	38,106	△4,595	28,395	27,129	63.5
경기도사회적경제원	14,779	12,298	△2,481	8,428	6,274	42

※ 출연금은 증감액이 아닌 총액으로 작성, 출연금 이외의 위탁사업비는 제외(순수 출연금만 작성)

※ 집행률은 1회 추경 출연금에 대한 집행액으로 작성(집행률 단위는 백분율임)

7. 국비사업과 중복, 확대 자체사업 (공통 소관)

- '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비사업과 유사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자체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자체/직접)
 -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으로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장려금)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노동자 일생활 균형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의 중복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대상사업이 되어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임금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지속가능성이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시범사업 추진 중에 예산이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4.5일제 사업 비교⁵⁰⁾ >

구 분	경기도	고용노동부
'26년 사업비	150억원	276억원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300인 미만 중소 중견기업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기업은 300인 이상도 신청 가능
유형	주35~36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①주4.5일제(요일자율선택) ②주35시간제 또는 주36시간제 ③격주 4일제 ④혼합형	부분도입: 주2시간 미만 실 노동시간 단축 전면도입: 주2시간 이상 실 노동시간 단축
지원한도	사업장당 최대 299명	20인 이상 50인 미만 :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지원내용	장려금,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업무효율화 지원	장려금, 컨설팅 지원

50) 2026년 제2회 추경 사전설명자료(노동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자체/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단계 전환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함.
- 이 사업은 대상을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종료(10월 1일부터 신청 불가) 예정임.
-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26년 제2회 추경안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115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형 사업은 10월 이후 중단될 예정인바 향후 도 자체사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최근 道の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동일·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도 자체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의 차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간 중복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중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